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30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3077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1219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가합476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로윈의 관리인 A

피고, 피상고인한국철도공사

판결 선고2015. 2. 12.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12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의 지체상금 부분이 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란이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의무불이행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목적물의 특수성,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가항력,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